

環境權과 市民意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

박 창 근

(세계환경인클럽 아시아지역 의장)

세계환경의 날을 즈음하여 지난 6월 1일 개최한 환경권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3편의 내용을 전국의 회원들을 위해 이번호부터 게재한다.

- 편집자 주 -

1. 머리말

얼마전 까지만 해도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서서히 그리고 작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매우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확대 되고 있다.

그 결과, 지구 생태계의 다양하고 오묘한調和가 위협적으로單純化, 同質化되고 있으며, 대기와 물 그리고 토양의自淨 능력과 균형이 파괴 되어 지구 환경 그 자체가 들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져 들고 있다.

이미, 지구는 沙漠化 현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焦土化 되고 있으며, 地震의 우발적 발생과 酸性비에 의한 湖水와 河川 그리고 土壤의 죽음 특히, 温室效果(GREEN

HOUSE EFFECT)와 ●傘效果(PARASOL EFFECT)의 2重 효과가 복합적으로 진행 됨으로서 氣象異變 등의 災害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 보다도 위협적인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南極의 오존層은 물론 北極의 오존層도 대규모로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위협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을 불러 오고, 한 나라에 있어서도 지역간의 격차로 인한 불만을 야기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염으로 인해 환경의 質이 현저하게 低下됨에 따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마저 缺如됨으로서 人間性 喪失이라는 비참한 현상마저 불러왔다.

말하자면, 환경오염은 단순히 지구 환경의 生態學的, 物理化學的

피해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기본적 자세와 정신마저 박탈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인류는 이 지구상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분명한 갈림 길에 지금 서 있다.

그 선택의 기회는 단 한번, 바로 지금 이시간에 결정하지 않으면 인될 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대두

환경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6·25韓國戰爭 발발 직후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우리의 山河는 그대로 生態系 파괴의 표본으로, 자연의 먹이사슬이 끊어졌고, 이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한 들쥐에 의해 오늘날 문제시 되고 있는



流行性 出血熱病이 그때 이미 등장했다.

또한, 환경 파괴에 따른 不安全的 食水는 많은 사람들을 장티프스, 이질, 콜레라 등에 시달리게 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를 환경문제는 차원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전쟁에 의한 怪疾과 衛生이라는 측면에서 논의 되었다.

그후, 1960년 이웃 나라 日本에서 급속한 산업발전의 결과로 “미나마타”事件과 “이따이 이따이病” 등의 公害病이 문제가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公害 즉, 환경오염의 危害性이 學界와 言論에서 그리고 일부 지식인 사회에서 問題視 되었지만, 경제성장 제 1주의 정책을 추구하던 정부에서는 “公害는 産業發展의 必然惡” 정도로 여겨 汚染을 외면했다.

따라서 한국의 환경오염은 1970년대 초까지 철저히 타부시 되어, 오염을 키우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그러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首都 스톡홀름에서 UN人間環境會議가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를 汎世界的인 차원으로 부각시키자, 우리나라도 이에 자극 받아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나 실험실의 자료로만 평가한다

그러나 그때 이미 우리나라의 오염은 이웃 나라의 좋은 교훈을 본 받아 加速, 深化, 擴大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오염을 단순히 衛生學的 問題로 평가해 保健社會部의 한 課에 배당시켜, 안이하게도 오염은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는 없다는 기막힌 것으로 오도해 버린다.

그리고 1980년 제 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등장한 憲法에는 基本權으로서의 “環境權”이 파격적으로 성문화 되고, “環境廳”을 설립해

환경보호의 政府 의지를 표방하지만, 막상 政策에는 환경보호 의지가 전혀 表出되지 않아, “憲法上的 環境權은 프로그램적 성격”이고, “環境廳 신설은 다만 환경행정을 펴고 있다는 對國民 홍보용”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그후, 다행히 國力伸張을 선 보이는 기회라고 평가한 올림픽이 유치되면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폭 넓게 논의 된다.

그러나 각 部, 處, 廳간의 異見으로 환경보호는 環境美化로 둔갑한다. 그 대표적인 事例가 “漢江”대책으로 水質 이용의 “한강종합對策공사”가 아닌 水上 이용의 “한강종합開發공사”라는 前代未聞의 환경보호 작업이 펼쳐졌다.

그 결과 오늘날의 漢江은 “한강종합開發공사” 이전의 漢江보다 더 철저히, 더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문제는 6·25韓國戰爭이라는 상황으로부터 提起되었고, 비록 美化作業이기는 했지만 환경보호의 당위성은 “88올림픽”이라는 체육대회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期間(38년)동안의, 政府의 環境對策은 다음과 같다고 제시할 수 있다.

- 1) 1950년~1960년
문제: 流行性出血熱病과 食水 문제
대책: 전쟁 피해
- 2) 1961년~1971년
문제: 일본, “미나마타 병”발생
대책: 産業發展의 必然惡
- 3) 1972년~1976년
문제: UN인간환경선언
대책: 保健, 衛生的 측면으로 평가
- 4) 1977년~1979년
문제: 자연보호 범국민운동
대책: 깨끗하고, 아름답게

- 5) 1980년~1985년
문제: 環境廳 신설
대책: 數值(ppm 기준치)추구
- 6) 1986년~1988년
문제: 올림픽 유치
대책: 速決, 美化작업

3. 한국적 환경오염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은 “環境汚染”이라는 다분히 학술적인 용어를 갖다 붙이기에도 낯 뜨거운 저질 公害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환경오염은 無知에서 저질러졌다.

환경오염 피해의 최초의 효시라고 할 영국의 “런던 스모그” 피해도, 이웃 일본의 “미나마타병”, “이따이 이따이병” 피해도 모두 그 피해를 사전에 예견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한 평범한 생활과 산업 활동의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후, 세계 각국에서는 생활과 산업 활동의 과정에서 빚어질 예기치 못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국가적 정책은 물론, 개인의 생활에서도 환경보호적 측면의 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매일이다 시피 새롭게 合成 개발되는 화학물질과 새로운 공업 기술에 의해, 그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다른 새 오염물질의 출현과 피해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오염원이 海流나 기상학적 결과에 따라 다른나라의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국제적 분쟁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오염방지와 대책을 한 국가의 문제에서 이웃, 더 나아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세계가 共同的인 관심사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런,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우



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보호의 공동 보조는 커녕, 아직도 한국적 오염 원이라고 할 公衆道德 不在와 상실에 의해 야기되는 形而下學의인 공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즉, 無知에서가 아니라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범죄성 공해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企業, 그중에서도 中小企業보다 大企業이 범죄성 공해에 앞장 섰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며, 또한 이를 은폐 내지 부추킨 경우가 과거의 정부 정책과 행정에 도사리고 있었음은 국제적인 망신이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공해의 政經 유착에 힘 입은(?) 일반 국민들마저 뒤질세라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라는 것이다.

實例 하나를 본다.

자연파괴의 경우, 共有物에 대한 인식不在로 내 땅만이 내 것이고 國土라는 公共財의 가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

따라서 자연이라는 우리의 국토는 파괴의 정도를 넘어 쓰레기장화되었다.

심지어는 “자연보호 범국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국토 청소 작업은 1977년부터 10년이 넘는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우리의 山河가 깨끗해 지기는 커녕 더욱 더럽혀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을 것인가? 다만 無知에서 야기된 실수라고 할 것인가? 내 것만 아는 亡國的 국민성 때문이라고 自認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共有物이란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도 생각지 않는 大氣 등 환경요소와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데 누구의 지지도 받지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生態系 등의

활동요소를 가리킨다.

그러나 오늘날 법적으로 강제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업은 공유물을 다루어 不當하게라도 자기 소유인양 사용하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믿는 개인이나 기업이 의외로 많다.

이는 共有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아직도 未開해, 당장 눈앞의 개인적 이익을 먼 훗날의 사회적, 국가적 이익에 우선시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잠재해 있겠지만, 단적으로 지적한다면 지난 날 위정자의 잘못된 政策 수행과 私利私慾만을 앞세운 일부 기업주에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권위주의 政權유지 때문에 위정자들은 정작 국가의 기본 조건인 국토(대기와 수질 그리고 토양 등)의 質에 관한 정책적 배려를 소홀이 했다. 여기에 일부 반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의 비호 아래, 국민 모두의 共有物인 대기와 수질 그리고 토양의 質을 私有物인양 취급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全國土의 오염현상을 초래해 온 것이다.

4. 소비경제의 극성

그리고 국민의 오염 조장은 그 예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막힌 행태로 지속되어 왔다.

그 實例 하나를 본다.

한때, 우리에게는 消費가 美德이었던 꿈같은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환경이 오염되는 많은 원인중 하나가 생산과 폐기의 과정에서 파생된다고 볼 때, 지금 우리는 소비가 미덕이기는 커녕 때에 따라서는 惡德이고 犯罪가 될 수 있는 기막힌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이

다.

즉, 생산의 工程과정에서 석탄과 석유를 연소해 에너지를 얻을 때, 대기오염 물질이 생성되고, 각종 화학물질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때, 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공장 굴뚝에 집진기를 설치하고, 폐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가동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100% 보장되는 오염방지 기술이 없다는데 오늘의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화학적 물질이 첨가된(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제품엔 水銀을 비롯해 많은 重金屬 물질의 特性을 이용한다.) 제품을 사용하고 난 후의 폐기과정에서 함부로 태우거나, 아무 곳이나 묻거나, 버릴 경우 그대로 오염원이 되어, 우리의 생존 기반인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경제는 새로운 原料에서 완제품으로, 완제품을 소비로 그리고 내 버려지는 폐건으로 조정되고 있다.

소비자는 이 순환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많은 제품들은 고쳐 쓸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부서졌을 때는 버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새로 물건을 사지 않고 제품을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電子제품의 경우는 6개월이 멀다고,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모델을 선 보이고 있으며, 實用보다는 패션에 치우치고 있어, 멀쩡한 제품을 단순히 舊形이라는 이유로 버리게 한다.

오늘날과 같은 公害時代에서는 현재의 경제 우선성과 경제가치는 그 옛날 공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시대에 발달



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엔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더 많은 자원 소모적인 쓰고 버리는 경제가 우선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특히,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1회용 제품이 마구잡이로 개발되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1회용으로서의 效用 가치를 생각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다만 새롭고, 쓰기에 조금 편리하다는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로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회용 사용이 조금은 문화적인 생활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소비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 오늘의 1회용 시대를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5. 환경보호의 길

환경오염은 사실상 국민들의 인식 부족에서 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利益 우선 때문에 지능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다고 볼때, 모든 국민의 환경에 대한 意識改革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즉, 환경의 중요성과 보호의 당위성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하루 아침에 간단히 될 일은 아니다. 적어도, 幼年期의 가정교육으로부터 학교교육, 성인의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환경중시의 사회풍토가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個人主義, 利己主義가 팽배한 사회풍토에서는 共有物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이 정당하게 평가되기는 어렵다.

즉, 국가의 정책이 오직 성장, 그것도 GNP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물아가니까, 또 하나의 GNP (GROSS NATIONAL POLLUTION) 즉, “國民 總汚染”이라는 아이

러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利潤에 부수된 여러가지 부작용(파괴와 오염)이나, 또 반대로 현재는 오염방지 투자가 기업의 직접 이윤으로는 돌아오지 않으나 국가 경제 전체로 보아서는 분명히 이득인 환경보호를 計量하지 않고 등한시한 결과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적어도 GNP 성장 제1주의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GNP라는 것은 1년동안 그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貨幣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GNP가 오른다는 것은 대개는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되든지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뜻하며, 또는 그 모두를 말한다. 그리고 이는 원료 소비량의 증가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GNP의 성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보호의 1차적인 조건인 인구억제와 생산 억제에 역행하는 조건인 것이다.

더구나 현재 경제는 투자와 이윤을 計量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 計量할 수 없는 것은 無價値한 것, 없는 것 등으로 판단해, 공기와 물과 같이 무한이 많아서(실제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計量하기 어려운 것은 무관심해 진다.

여기에 환경대책에 대한 국가의 意志는 선진국에서도 경제성장의 목표와 관련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를 우선하는 환경대책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국가의 기본적인 조건이 國土에 있다면, 그 국토를 형성하는 대기와 물 그리고 토양 등의 환경의 質은 맑고, 깨끗하며, 풍요로

워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흔히,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라고 할 때, 그 건강한 육체는 병들지 않은 쾌적한 환경에서만 이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재의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집중적인 대책이 지금 이 시간 그 무엇에 앞서 시급한 것이다.

공기와 물과 토양과 같은 生存을 위한 환경은 어디서 빌어올 수도, 훔쳐올 수도 없는 우리의 마지막 자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처에서 民主化의 열기가 분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그 소중함에 대한 공동인식의 결여 때문에 共有物로서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民主化란 모든 국민이 고루 자유스럽게, 잘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인간이 인간답게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으로서 環境權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生存權이 오늘날의 可視的 민주화 바람에 깃발마냥 날리고, 단순히 보기 좋은 명문으로서만 존재한다면 인간으로서의 道德的 삶, 그 자체는 박탈당하고 非人間的인 생존 그 자체만이 값없이 남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자연자원과 환경은 국민과 국가의 절대 자본으로서의 共有物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6. 맺는말

“環境權과 市民意識”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을 맺으려 한다.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단편적으로 정리한다.

* 환경 문제(특히,公害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국민의意識은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政策 방향이 非환경보호적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하여서는 被害者의인 意識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企業人들의 反社會的 事業자세 때문에 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과감히 환경보호 우선 政策을 펼쳐야 하며, 사회 지도급 企業들은 企業倫理 이전에 企業의 활동 바탕을 책임진다는 각성으로 환경보호 대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헌법에 명문된 環境權은 좋은 헌법을 위한 구색 맞추기 式이어서는 안된다.

비록, 헌법에는 環境權을 명문시키지 않았어도 政策에 환경보호를 우선하고 있는 많은 先進國들과 같이, 국민의 基本的인 삶을 위한 환경보호 우선 政策이 시행되어야 한다.

* 環境權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에 따라 兩分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그 어느 한쪽을 특정인에게 강제하여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展開되고 있는 官 主導形의 “자연보호 범국민운동”은 국민에게 環境權을 義務化시킨 행위였고, 그 운동 期間 反 자연보호적인 行政을 펴 온 정부의 政策은 뚜렷한 環境權의 침해였다.

* 生存을 우선할 수 있는 價値는 아무것도 없다.

生存 그 자체만을 위해서도 인간 환경관리인. 1989. 6

에겐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물이 필수적인 資源이다.

따라서 環境權의 價値는 生存權의 價値로 보는 것이다.

*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맑아야 하고, 우리가 마실 물은 깨끗해야 하며,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은 안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하며, 국민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 環境權이란 환경을 지킬 국가의 義務며, 환경을 지킬 국민의 權利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環境權을 포기해도 存在할 수 있지만, 국민은 生存을 위해서도 環境權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環境權의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국가의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국가의 政策은 환경보호 우선에 價値를 두어야 하며, 사회의 價値觀엔 환경보호가 존중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 環境權을 지킬 義務는 일반 국민보다, 국가의 政策과 企業에 더 큰 책임이 있다.

국민은 生存이라는 측면과 조금 더 나은 生活環境 속에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 때문에, 環境權의 義務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 좋은 生活環境이란, 여유있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가난하고 그 身分이 높지 않아도 사람이 사람다운 품위(환경의 영향 때문에 병들지 않고, 환경의 영향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의 영향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를 지키며 살 수 있게, 기본적으로 人權이 보장된 사회적 분위기를 좋은 生活環境이라고 할 수 있다.

* 環境權은 국가의 法的 義務며, 국민의 기본적 權利이다.

따라서 立法의 不作爲로 인한 環境權 침해는 국민의 人權侵害로 보아야 한다.

* 環境權을 지킨다는 것은 生存과 生活를 지킨다는 뜻이다.

生存과 生活를 포기할 바보는 국민중에 없다.

그러나 政策 입안자들 중에는 때로, 환경의 價値보다, 국가의 利益(加視的인 이익)이라는 측면을 앞세워, 環境權을 포기하는 바보가 있을 수 있다.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파괴와 오염으로부터 생활 위협을 방어할 본능적인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環境權은 헌법상의 명문이나 制度이기 이전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함께 갖춘 本能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치, 경제를 비롯한 국가 政策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증진시켜 주는데 있다면 그것은 곧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인간다운 품위를 지켜면서 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 政策의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環境權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보호 政策을 우선하는데 있다.

<다음호에는 한국환경기술연구소 유명소장의 「환경권과 기업윤리」편이 게재됩니다.>